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3. 27.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5년 3월 10일
-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2025년 3월 20일
- 라. 상정일자: 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5. 3. 24.)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차문철 생활환경국장)

- 가. 제안이유
 -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신설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정비(안 제3조)
 - 위원 해촉 사항 정비(안 제5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 기타 조문 현행화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류테레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연직 위원을 “부서 명”에서 “업무 기준”으로 변경하여 행정기구 개편 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심의의 결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구성)는 당연직 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부서 명칭”에서 “업무 기준”으로(“교통민원신고 업무 소관”)개정함
- 안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내용 중 본 위원회 기능에 맞게 적절히 규정함
- 안 제7조(회의운영)제4항은 제척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된 안 제5조의2의 내용과 중복됨에 따라 삭제함
- 또한 조문 전반적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근거하여 정비하였음.
- 그 밖에 위촉직의 성별균형참여 및 인권영향평가 검토결과를 반영함

○ 검토 결과

- 본 조례는 제정(1996.02.28.)된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6차례 개정한 바 있음. 이에 추후 행정기구 개편으로 국·과의 명칭 또는 소속이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없도록 당연직 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부서 명칭”에서 “업무 기준”으로(“교통민원신고 업무 소관”)개정하여 입법경제성을 제고하였음.
- 한편, 현행 조례 제7조(회의운영)제4항은 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해당 항을 삭제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안 제5조의 2)로 신설하였으며, 제척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위원회 심의·의결 시에 객관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책임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이번 임시회에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당연직 위원을 “부서 명칭”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소관 부서의 장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 부서의 장들까지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됨에 따라, 조문의 간결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방식이 적합한 방식이라고 사료되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 부서가 하나이기 때문에 “업무 중심”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입법경제성 측면에서 보다 적합할 것임.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503 호
----------	---------

제출연월일: 2025. 3.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신설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 구성 정비(안 제3조)
- 나. 위원 해촉 사항 정비(안 제5조)
-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 라. 기타 조문 현행화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부서 자체개선안(성별균형참여 반영) 동의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4) 인권영향평가: 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용어로 인해 인권침해 가능성 있음
⇒ 상기 검토 결과 반영하여 입법안 정비

변경 전	변경 후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②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청렴성 훼손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불출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라. 입법예고(2025. 1. 31. ~ 2. 20./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같음 한다”를 “같음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외 한다”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인정 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실 조사 하여”를 “사실 조사를 실시하여”로 한다.

제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 부위원장은 주차문화과장이 되며 위원”을 “위원”으로, “(조합,단체)관련자”를 “(조합, 단체)관련자”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를 “영등포구청장(이하”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교통민원신고 업무 소관 국장, 부위원장은 교통민원신고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제5조제1항 중 “1회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불출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한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월1회”를 “월 1회”로 한다.

제7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모든사항”을 “모든 사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기능) ① <u>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조사 후, 이첩된 사항은 심의·의결한 것으로 <u>같음</u> 한다.</p> <p>1. ~ 3.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 대상에서 <u>제외</u> 한다.</p> <p>1. 사업자(행위자)의 청문(진술) 기회 부여 시 행위를 <u>인정</u> 하는 경우</p> <p>2. <u>사실 조사</u> 하여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 될 경우</p> <p>3. (생략)</p>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후단 신설></p> <p><신 설></p>	<p>제2조(기능) ① <u>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u>-----</p> <p>-----</p> <p>-----.</p> <p>-----</p> <p>----- <u>같음</u>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p> <p>----- <u>제외</u>한다.</p> <p>1. -----</p> <p>----- <u>인정</u>하는</p> <p>-----</p> <p>2. <u>사실 조사</u>를 실시하여 -----</p> <p>-----</p> <p>3. (현행과 같음)</p> <p>제3조(구성) ① -----</p> <p>-----</p> <p>----- . <u>이</u> 경우 <u>위촉직</u>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p> <p>② <u>위원장</u>은 <u>교통민원신고</u> 업무 소관 국장, <u>부위원장</u>은 <u>교통민원신고</u>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p>

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한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p>제6조(위원회의 개최)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u>월1회</u>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제6조(위원회의 개최) ① ----- ----- <u>월 1회</u>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회의운영) ① ~ ③ (생략)</p>	<p>제7조(회의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u>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u></p>	<p><삭제></p>
<p>⑤ (생략)</p>	<p>④ (현행 제5항과 같음)</p>
<p>제10조(간사) ①·② (생략)</p> <p>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교통민원심의 각 안건에 대한 <u>모든사항</u>을 사실에 입각하여 조사 상정하여야 한다.</p>	<p>제10조(간사)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모든 사항</u>----- -----.</p>